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처리계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

2. 감사기간 : 2002.12.3 ~ 12. 9(7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당연대상기관 : 군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4. 감사대상결과

가. 감사반 편성

- 위원장 : 심재국 위원
- 간 사 : 고응중 위원
- 위 원 : 이만재, 차재천, 이수현, 신교선, 김영해위원

나. 감사일정

감사일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2002.12.3 (화)	기획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기능전환팀	의회 회의실	
12.4(수)	재무과,문화관광과,환경 복지과,	"	
12.5(목)	임업경영과,건설과,지역 도시과,보건사업과	"	
12.6(금)	농업경영과,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위생환경 사업소	"	
12.7(토)	휴 회	휴 회	
12.8(일)	일 요 일		
12.9(월)	강 평	의회 회의실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총 224건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건의사항 조서(별첨1)

나. 시정사항 : 23건(별첨2)

다. 건의사항 : 33건(별첨3)

7. 기타 특기사항 : 없 음

6. 중요 근거서류 : 없 음

[별첨1]

시정및건의사항조사서

부서명	처리내용	비고
기획실	지적사항 (3건)	
	1. 대형업체 관내물품 구매유도 및 평창군 모범적실천 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부당집행 16.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한 군수공약사항 재검토	1 6 16
민원봉사과	지적사항 (2건)	
	2.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대 조정 3. 민원 후견인제 추진부진	2 3
	건의사항 (4건)	
	1.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검토 2.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에 대한 홍보철저 3. 버스 간이승강장 특성화 4. 노외·노외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1 2 3 4
자치행정과	지적사항 (2건)	
	4. 군수표창 난발 및 지역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시상 5. 주변여건을 무시한 공무원 인사단행	4 5
	건의사항 (4건)	
	5. 반상회 건의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단일화 6. 마을회관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 7. 8~9급 하급직 공무원에 대한 자체승진 검토 13.인구늘리기 운동에 대한 공무원 모범적 실천	5 6 7 13
기능전환팀	건의사항 (1건)	
	12.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능전환 신중한 검토	12
재무과	지적사항 (2건)	
	7. 도시계획내 도로편입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부진 8.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균유재산 교환(임업경영과 공통)	7 8
	23.객관성이 결여된 수해복구공사 계약	23

부 서	처 리 내 용	비 고
	건의사항 (4건)	
	8.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검토	8
	9. 공유지 임대시 측량부담에 대한 기준마련과 홍보철저	9
	10. 불용품 매각시 대주민 홍보철저	10
	11. 화전대토지 미불하건에 대한 조속한 불하	11
문화관광과	지적사항 (2건)	
	9.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미흡	9
	10. 평창공설테니스장 순리를 벗어난 무리한 사업추진	10
	11.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미흡	11
	건의사항 (1건)	
14. 노산성 보존관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14	
환경복지과	지적사항 (2건)	
	12. 오페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부진	12
	13. 분노처리장 차별화된 지원(기획감사실 공통)	13
	건의사항 (2건)	
	15.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확대 16. 무의탁노인 회갑상 차려주기 홍보철저	15 16
임업경영과	지적사항 (1건)	
	14. 벌채후 운재로 복구미흡	14
	건의사항 (4건)	
	17. 도로변 가로수정책 정립	17
	18. 사유림협업체 경영사업 확대시행	18
19. 산촌종합개발사업 보완시행	19	
20. 보호수 관리철저	20	
21. 산불방지 자생단체 중복지원 자제	21	

부 서	처 리 내 용	비 고
건 설 과	지적사항 (1건)	
	15.한탄~마하간 군도 확포장 약속이행	15
	건의사항 (1건)	
	22.골재수급 대책마련 23.기화 받기반정비지구 관정지원 확대	22 23
지역도시과	지적사항 (1건)	
	17.미탄·장평 오수처리장 운영미흡	17
보건의료원	건의사항 (1건)	
	24.서민층을 위한 무료검진 홍보철저	24
농업경영과	지적사항 (1건)	
	18.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미흡	18
	19.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 및 운영미흡	19
	건의사항 (4)	
	25.농업용 차량지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후 지원	25
	26.유해조수 보호대책 마련	26
	27.농업대안의 민박 및 펜션산업의 상업화 방지	27
	28.백합종구 지속적 지원	28
축산경영과	지적사항 (1건)	
	20.평창도축장 시설개량사업 사업검토 미흡	20
	21.어도시설 설치미흡	21
	건의사항 (2건)	
	29.치어방류사업 수종선택 신중한 검토 30.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강력한 추진	29 30

부 서	처 리 내 용	비 고
기술개발과	지적사항 (1건)	22
	1. 물고추냉이 사업자선정 미흡	
	건의사항 (1건)	31 32 33
	31.버섯재배 시험포 교육장활용	
	32.수박·인삼 재배사업 지원확대	
	33.경운기 사고예방 대책마련	

□ 지적사항 [별첨2]

1. 대형업체 관내물품 구매유도 및 평창군 모범적 실천

▶ 기획실

- 2002년도 평창군이 우리군 관내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내 상품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관내 상품구매율이 11.7%, 원자재 및 기타상품 구입 28%, 건설업체 이용 4.5%등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지역에서 이익을 창출하고도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무시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바, 이들 8개업체를 포함한 관내 모든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평창군 역시 일반물품·공사계약·용역등의 구매 비율을 보면 관내(276건)보다는 관외(672건)가 3배 가량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어느기관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할 평창군의 설득력없는 행위가 반복되는 바, 향후 기획감사실이 주도하여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 물품이용에 적극 앞장서기 바람.

2.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대 조정 ▶ 민원봉사과

- 자가운전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내버스 이용자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이 그 대상임. 그러나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시간·횡수등의 불합리한 점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해결을 바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군이 평창운수등에 공영버스를 구입하여 지원하였고 매년 그 손실액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만큼 노선·운행시간·횡수등의 전반전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버스 운수업체에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대관령지역은 1일 아침·저녁 각1회씩 2회 운영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현재 진부~횡계 노선을 진부~대관령으로 연장운행 해주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3. 민원 후견인제 추진부진 ▶ 종합민원실

- 민원인에 대하여 책임성있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민원 후견인제」의 추진실태를 점검해 보면 공무원의 추진의지 부족과 업무에 미숙한 8~9급 하급직원 지정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추진이 전혀 안되고 사장된 상태임 따라서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효과를 비교하여 효과가 크다고 판단 되면 실질적인 추진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바람.

4. **군수표창 난발 및 지역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시상** ▶ **자치행정과**

- 민선시대 민간인 또는 단체에 시상하는 군수표창의 횟수를 살펴보면, 관선보다 현격히 난발되고 있어 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바, 정확한 선별을 통하여 무분별한 표창을 자제하기 바람, 마을자치제등 성격상 실적평가를 통해 시상금이 지급되는 시상부분은 같은 상을 1개 마을에 연속하여 지급하고 다른 부문의 상까지 중복 시상한 것으로 나타났음. 설상 실적평가를 통한 평가라해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다른 마을과의 안배를 고려한 시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5. **주변여건을 무시한 공무원 인사단행** ▶ **자치행정과**

- 2002.11.6일 단행한 평창군 인사를 살펴보면, 평창군의회가 제99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실시할 것을 여러채널을 통해 집행부에 알렸고 12월 2일부터 법정 정례회가 시작됨을 인지 하고도 뚜렷한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 공무원 이등으로 인한 업무 파악부족과 미숙으로 군정질문시 답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기에 급급한 형식적인 제출과 각종 통계가 상이하는등 부족한 점이 많았고 심지어는 답변을 하지 못하여 감사가 뒤로 미루어지는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따라서 향후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는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시기를 선택하기 바람.

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부당집행** ▶ 기획실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예산편성 목적은 말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보면 일부 3~4천만원 규모의 사업과 심지어는 7,000천원의 사업이 이 예산으로 사용된 것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읍면에 시달하기 바람.

7. **도시계획내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부진** ▶ 재무과

- 지방세법 제292조에 단서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에도 도시계획내 도로로 편입되어 사유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감면신청이 없다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 부담을 주는 행위임. 따라서 도시계획이 도면으로 되어있어 직권으로 감면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면적 환산된 도시계획이 수립될 경우 보상차원이라도 전원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균유재산 교환 소극적 대처** 재무과, 임업경영과

- 균유재산 교환에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균유재산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령 101조 제1항 제1호가 신설(2002.10.20)되었음에도 평창군의 교환 형태를 보면 개정취지를 벗어나 개정 이전상태의 업무추진 태도와

담당자의 사적인 판단등 행정적인 입장에서 교환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교환하고자 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사고 있는 바, 향후 개정취지대로 주민과 지역경제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교환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9.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미흡** ▶ **문화관광과**

- 2002년도 현재, 1999년부터 지금까지 담배 및 술판매등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총44건 단속중 총 27건만 징수되고 40%인 17건 52,000천원이 체납되는등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경각심 고취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10. **평창공설테니스장 순리를 벗어난 무리한 사업추진** ▶ **문화관광과**

- 집행부의 즉흥성·선심성으로 인하여 의회와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평창읍민의 집단행동이 있었던 평창공설테니스장 조성사업과 관련, 종부 테니스클럽의 부담문제, 총가입찰, 당초보다 두배가 넘는 예산소요등 일련의 의회의 의결권을 일탈한 행위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런 순리를 벗어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11. **마을관리휴양지 관리미흡** ▶ **문화관광과**

-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되어 운영중인 9개소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급수시설외에는 전무한 상태로서 관광객의 무단 쓰레기 투기, 요금 징수원의 불친절, 통일되지 않는 복장, 화장실 불결함등으로 인하여 우리군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바,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기 바람.

12.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부진** ▶ 환경복지과

- 2001년, 2002년도 오·폐수 처리·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사항을 살펴 보면, 대상업소보다 점검업소가 적음은 물론 위반업소 단속건수도 단1건에 불과하는등 청정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평창군 환경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점검과 단속이 미진한 것은 수거물을 상급 기관에 의뢰하여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나 그러나 경각심의 고취차원을 위해서도 한층더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임.

13. **분뇨처리장 차별화된 지원** ▶ 환경복지과, 기획감사실

-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는 의회가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차례 차별화된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감사당일 평창군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이라고 제시한 것을 보면 다른지역과 동일한 일반사업으로서 타지역과 같이 주민의 항의가 없다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별화된 지원을 하기바람.

14. **벌채후 운재로 복구미흡** ▶ 임업경영과

- 산림벌채후 운재로(반출로)복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결과,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막대한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를 보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림 부분(미탄면 회동리 경림산업)에 대하여는 국유림 관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복구가 되도록 하기 바람.

15. **한탄~마하간 군도 확포장 약속 이행** ▶ 건설과

- 레프팅 수요증가로 인하여 한탄~마하간 군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군도는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여 현지주민이 농업경영과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음. 이에따라 평창군은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도로를 확포장 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을 설득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후순위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올해부터 편입부지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조속히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6. 마을안길 포장에 대한 군수공약사항 재검토 ▶ 기 획 실

- 우리군 마을안길 미포장율은 472.1Km로 총소요액은 5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담당부서의 계획을 살펴보면 매년 15억씩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연간 15억씩 투자할 경우 전구간을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0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나, 민선3기 군수 공약사항중 도로망의 현대화를 보면 마을안길 뿐만이 아닌 농로까지 2006년까지 완전포장 한다고 하여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사항을 공약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읍·면별 마을안길 포장율을 보면 7개 읍·면에 비해 다른 1개 읍·면만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이부분에 대하여는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17. 미탄·장평 오수처리장 운영미흡 ▶ 지역도시과

- 미탄면 창리에 위치한 미탄 오수처리장을 보면 오폐수가 유입관로로 유입되지 않고 지하수로 누수가 예견되는 바, 누수현상 발생시 지하수 오염원이 우려되므로 유입관로를 점검하기 바라며, 장평오수처리장의 경우 처리용량은 1일 250톤이나 배출량은 1일 600톤 가량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바,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속사지역은 관광객 급증과 집단취락지역으로 오수처리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람.

18.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미흡** ▶ **농업경영과**

-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영농계획서를 접수, 현지확인하여 영농계획이 현지와 부합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취득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나, 현지에 입목이 있는등 영농계획 실현이 불가능함에도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하여 취득후 농지법에 의한 처분명령을 하여 토지주와 법정분쟁이 발생하는등 농지취득자격발급 업무에 상당부분 소홀함이 있고 농지전용신고시 읍·면 담당공무원의 법령숙지 미흡으로 민원이 접수되어도 처리가 미흡하여 접수하지 않고 상당부분 민원처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한 바 철저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19.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 및 운영미흡** ▶ **농업경영과**

-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태를 보면, 당초취지와 맞지않게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시설물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바, 운영과 관리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20. **평창도축장 시설개량사업 사업검토 미흡** ▶ **축산경영과**

- 평창도축장 현대화시설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 예상치 못한 막대한 사업자 부담과 예산지원이 예상되는 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또한 축산물 가공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1. **어도시설 설치미흡** ▶ **축산경영과,건설과**

-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어도시설 대부분이 현지 실정에 맞지않게 설계·시공되어 어류의 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당초 목적인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부서간 치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22. 물고추냉이 사업자선정 미흡 ▶ 기술개발과

- 농업부문의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미탄면 창리 255번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고추냉이 실증시험재배 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외지에 주소를 두고 영리목적의 출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외지인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23. 객관성이 결여된 수해복구공사 계약 ▶ 재무과

- 2002.8월초 집중호우와 8월말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공사 계약과 관련, 평창군은 복구공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결심권자의 결심으로 2002년 9월 30일 이전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계약을 한다고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뚜렷한 이유없이 내부방침을 갑자기 변경하여 10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입한 (주)한솔외 15개업체중 10개업체에 대하여 전입으로 인하여 능력검증이 안되었음에도 작게는 1억부터 크게는 6억까지, 일부 몇개 업체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7억에 가까운 금액을 배정하는등 9월 30일 이후 전입한 업체에 수해복구공사비 총액에 20%인 35억 3,938만원을 배정한 사실은 특혜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된 계약으로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감사당일 재무과장의 9월 30일 이후 전입한 업체에 대한 배정사실이 없다는 진술과 허위작성의 자료제출은 의회를 경시한 행위로서 차후 이런일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

□ 건의사항

1.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설치 검토(민원봉사과)

- 읍·면 공무원 인력의 감축조정으로 대민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있는 무인민원 발급기 추가확대 설치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바람.

2.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에 대한 적극적홍보(민원봉사과)

-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에 대하여는 대상자가 지원 사업을 몰라 수혜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주기 바람.

3. 버스 간이승강장 특성화 (민원봉사과)

-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한 바와 같이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하고 있는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사업이 설치비와 설치방법, 모델등이 각각 상이하야 투자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바, 우리군을 알릴 수 있고 특성화할 수 있는 표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4. 노외·노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민원봉사과)

- 우리군 시내지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사실을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운전자의 과실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주차공간 부족과 노상·노외 주차장 안내미흡도 그 원인이 되고있음.
따라서 노상·노외 주차장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내 국·공유지 실태를 파악하여 주차공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도시과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5. 반상회 건의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일화 검토 (자치행정과)

- 필요에 따라 소규모로 추진되는 반상회 건의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성격상 같은 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인력과 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마을회관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자치행정과)

- 우리군 마을회관 실태를 보면, 기설치된 마을회관은 상당부분 노후된 것도 있고 신규 신축은 우선순위등 체계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즉흥성으로 설치되고 있는 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수 및 신규 설치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공개하기 바람.

7. 8~9급 하급공무원에 대한 자체승진 검토(자치행정과)

- "승진공무원의 대한 읍·면 전보" 인사원칙에 따라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8~9급 직원은 업무능력도 배양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동을 해야하는등 업무추진등 모든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인사원칙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내부만의 기준이라면 정확한 검토를 하여주기 바람.

8.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 검토(재무과)

- 우리군 지역경제는 사실상 관공서에 의한 자금회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특히 동절기에 업체와 군민들의 경제는 상당히 위축되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각종 공사비 집행에 있어서는 이월되는 사업이라해도 법 또는 내부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사업추진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선급금·기성금 지급을 강구하여 주기바람.

9. 공유지 임대시 측량부담에 대한 기준마련과 홍보철저(재무과)

- 현재 공유지 임대시 경계를 알기위한 측량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분은 민원인이 부담하고 다른 부분은 행정이 부담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측량수수료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임대시 민원인에게 정확히 홍보하여 불평·불만 요소를 없애주기 바람.

10. 불용품 매각시 대주민 매각홍보 철저(재무과)

- 관내 주민 또는 사회단체는 재정여건등 여러여건상으로 인하여 중고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불용품 매각시는 취득 방법과 시기·품목을 군민다수가 알 수 있는 채널로 (내고장 소식지 등) 철저히 홍보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 또는 단체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11. 화전대토지 미불하건에 대한 조속한 불하(재무과)

- 1964년 화전정리 10개년계획에 의거 추진한 화전대토지 공유지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기간내에 재산권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2.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능전환 신중한 대처(기능전환팀)

- 대통령 100대 과제인 읍면 기능전환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확실적인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행 초기부터 여러문제 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성급한 시행을 자제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정책적 개선을 건의하여 주기 바람.

13. 인구늘리기 운동에 대한 공무원 모범적 실천(자치행정과)

- 우리군이 추진하고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인구유입은 당사자와의 이해와 협조없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평창군 공무원 일부가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은 행정의 설득력을 잃는 사례로 이들을 설득하여 행정이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람

14. 노산성 보존관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문화관광과)

- 평창읍 하리 산1번지 및 중리 산10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역문화재인 평창 노산성에 대하여는 지표조사를 통한 복원계획 수립과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15.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확대(환경복지과)

-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예산액을 보면 2001년도 4개소 1,000만원, 2002년도 7개소 1,0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음. 2002년도는 2001년도 비해 지원마을이 2개 가량 늘어났음에도 예산액에 끼워맞춰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군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바람.

16. 무의탁노인 회갑상 차려주기 홍보철저(환경복지과)

- 무의탁노인 회갑상 차리기 사업이 8개 읍면중 일부 3개 면만 편중(방림면2, 진부면 2, 도암면1)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미숙과 홍보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8개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바람.

17. 도로변 가로수정책 정립(임업경영과)

- 지금까지의 우리군 도로변 가로수 정책을 보면,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의지가 변경되어 제대로된 가로수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가로수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등을 정립해보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조속히 선택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식재후 많은 수목이 고사되는 것은 토양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바, 식재전 토질개량을 실시한 후 식재하기 바람.

18. 사유림협업체 경영사업 확대시행(임업경영과)

- 방림협업체외 2개협업체에 지원된 사유림협업체 경영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투자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바람.

19.산촌종합개발사업 보완시행(임업경영과)

- 평창읍 고길·지동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대화면 하안미5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20.보호수 관리철저(임업경영과)

- 미탄면 창리 169-3번지의 26개소, 10종 44본의 보호수에 대하여는 인근 주변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보고 주변상황이 보호수 관리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근 가옥과 토지를 균유화 해서라도 보호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산불방지 자생단체 중복지원 자제(임업경영과)

- 산불방지 활동단체에 지원되는 자생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의 중복성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읍·면의 유급감시원 채용에 있어서도 이들의 활동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여 주기바람.

22. 골재수급 대책마련(건설과)

- 2003년도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많은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모래등 레미콘에 사용되는 골재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내년도 골재수급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육상골재채취등의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관급 공급업체가 한곳에 편중되어 레미콘 공급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무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달업체에 건의하여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수해 복구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바람.

23. 기화 발기반정비지구 관정지원 확대(건설과)

- 2002년 12월 31일 완료계획에 있는 기화 발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관정 이용실태를 보면 첨단버섯재배사 5동이 위치하고 있어 기존 관정으로는 용수가 부족한 바, 관정의 수량을 다시한번 점검해보고 부족할 경우 관정 추가개발 하는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4. 서민층을 위한 무료검진 홍보철저(보건의료원)

- 노인무료 건강진료등 서민층을 위한 보건시책이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수혜인원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철저한 홍보로 사업효과를 높여주기 바람.

25. 농업용 차량지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후 지원(농업경영과)

-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에 지원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지 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기 바라며 축협등 생산자 단체에 지원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100% 준비지원을 자제하고 일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26. 유해조수 보호대책 마련(농업경영과)

- 날로 피해가 더해가는 유해조수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가 보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바, 시범적으로 보상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27. 농업대안의 민박 및 펜션산업의 상업화 방지(농업경영과)

- 농업대안으로 평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민박 및 펜션사업에 대하여 자칫 부동산 투기꾼과 외지인, 일반 특정인으로 하여금 영리목적의 상업화될 수 있는 바, 실질적인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사업자 선정과 철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8. 백합종구 지속적 지원(농업경영과)

- 수출주력 작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백합 화훼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지원이 축소될 경우 전략작목 성장에 많은 영향이 있음. 따라서 종구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준비를 부담해서라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29. 치어방류 사업 수종선택 신중한 검토(축산경영과)

-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치어방류사업에 대하여는 방류장소를 한곳에 편중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선택하기

바라며 어종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군 자연조건에 맞는 어종을 선택하여 방류사업을 실시하기 바람.

30.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강력한 추진(축산경영과)

- 최근 불법어업 형태가 외지인에 의해 야간으로 첨단장비를 동원하는 등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바, 지능화된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방법을 개선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주기바람.

31. 버섯재배 시험포 교육장 활용(기술개발과)

-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버섯재배 시험포에 대하여는 버섯재배농가가 기술습득과 농가간 기술 교환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주기바람.

32. 수박·인삼 재배사업 지원확대(기술개발과)

- 평창읍 종부리 주민의 고소득 작물인 수박과 평창읍 일원에 점차 확대재배되고 있는 인삼을 남부권지역의 주력작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농자재등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3. 경운기 사고예방 대책마련(기술개발과)

- 교통사고 사각 기기인 경운기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야광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 주기바람.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기 획 감사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지적사항</div> <p>1. 대형업체 관내물품 구매유도 및 평창군 모범적실천 ○ 2002년도 평창군이 우리군 관내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내 상품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관내 상품구매율이 11.7%, 원자재 및 기타 상품구입 28%, 건설업체 이용 4.5%등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지역에서 이익을 창출하고도 지역주민과 지역 경제를 무시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바, 이들 8개업체를 포함한 관내 모든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평창군 역시 일반물품·공사계약·용역등의 구매 비율을 보면 관내(276건)보다는 관외(672건)가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어느 기관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할 평창군의 설득력 없는 행위가 반복되는 바, 향후 기획감사실이 주도하여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 물품이용에 적극 앞장서기 바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처리계획</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품 우선 팔아주기 추진 ○ 대량소비업체의 지역상품구매 실태조사 및 우선팔아주기 권장 - 구매실태조사 및 우선 팔아주기 실적분석(연 2회) ○ 물품구매시 지역물품 우선 구매 및 관내업체 수의계약구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기 획 감사실	지적사항	<p>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부당집행</p> <p>○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예산편성 목적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일부 3 ~ 4천만원 규모의 사업과 심지어는 7,000천원의 사업이 이 예산으로 사용된 것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읍면에 시달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2003년도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예측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해소를 위한 사업비로서</p> <p>○ 단위 사업별 20,000천원이하의 소규모사업을 신청에 의거 검토 후 효율적인 예산집행계획</p> <p>※ 2003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 계획 통보 - 기획 13130 - 1578(2002. 12. 27)</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기 획 감 사 실	지적사항	<p>16. 마을안길 포장에 대한 군수공약사항 재검토</p> <p>○ 우리군 마을안길 미포장율은 472.1km로 총소요액은 5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담당부서의 계획을 살펴보면 매년 15억원씩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연간 15억원씩 투자할 경우 전구간을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민선3기 군수 공약사항중 도로망의 현대화를 보면 마을안길 뿐만이 아닌 농로까지 2006년까지 완전포장한다고 하여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사항을 공약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읍·면별 마을안길 포장율을 보면 7개 읍·면에 비해 다른 1개 읍·면만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이부분에 대하여는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 바랍.</p>
	처리계획	<p>○ 당초 자료 제출시는 읍면별 미포장 현황을 농로를 포함하여 제출되어 총연장이 743km였으나 민선 3기 공약시에는 농로는 마을안길 개념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순수 마을안길만을 대상으로 공약하였고,</p> <p>○ 순수 마을길은 전체 연장 387km중 182km를 2002년도까지 기포장되었으며 미포장된 205km에 대하여는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을 비롯한 농어촌생활도로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기타사업 등을 통하여 추진할 시 매년 20 ~ 30km를 정비할 수 있어 4 ~ 7년내 완공목표로 공약하였던 것입니다.</p> <p>○ 2006년도 완공목표는 경제여건과 예산 수반이 충분히 이루어졌을시 가능하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수해 발생으로 예산확보가 충분치 못하여 다소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최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통하여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리고 합니다.</p> <p>○ 읍면별 포장율에 대하여는 2001년 조사된 자료와 2002년 농어촌생활도로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정립하였으며, 추후 5년마다 재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p>

정보통신망

평 창 군

우 200-807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 033-330-2216 / 전송 033-330-2594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 권 순 철 예산담당 : 전 완 립 담당자 오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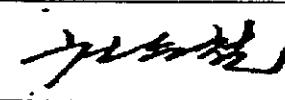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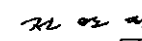
문서번호 기획 13310-1578

시행일자 2002.12.27 ()

(경 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보존기간	3	군수
공개여부	공개	
부군수		
기획실장	전결	예산담당 
기 안	오 정 희	
심 사 자		심 사 일

계 목 2003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계획 통보

1.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소규모사업과 예측이 어려워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2. 2003년 주민숙원사업비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불임과 같이 집행 계획을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002년도 지원사업(군비)에 대한 정산서를 2003. 1.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 임 1) 2003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계획 1부.
 2) 2002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지원내역 1부. 끝.

평 창 군 수

수신처 : 평창읍장, 미탄면장, 방림면장, 대화면장, 봉평면장, 용평면장, 진부면장, 도암면장

"군민과 함께 2010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합니다"

2003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계획

□ 경비성격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소규모사업과 예측이 어려워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경비.

□ 예산현황

- 예산확보 : 1,900백만원(군비-300백만원, 면비-1,600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자체사업 401-01(시설비)

□ 예산집행방침

○ 대상사업

-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
- 예측하지 못한 예산 미계상 소규모사업
- 단위사업별 20,000천원 이하의 사업
⇒ 20,000천원 초과시 사전 군과 협의후 집행

○ 연간 집행계획수립 시행

- 상.하반기 각각 50% 집행
- 연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 월별 기준액 범위안에서 시행
- 년초에 전사업을 확정 일시에 집행하는 사례 금지

○ 타용도 전용 집행금지

- 경상경비(보조금, 보상금) 위주의 예산집행 금지
- 자산 및 물품취득비성 경비, 기관내부 사업비로 집행금지

☞ 예측이 가능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 행정사항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면비)의 집행계획을 자체수립시행
- 사업추진(면비)시에는 예산배정요구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정산보고 철저 : 면비는 자체정산(연말 일괄 보고)
- 군비는 단위사업별로 사업종료 즉시 정산서 제출(사진첨부)

2002년 행정 사무 감사 지적,건의 사항 처리 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 사항 처리계획
민원 봉사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지적사항</div>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처리계획</div> <p>*농어촌 버스의 노선 및 시간표는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위주로 편성 운영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농어촌 버스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정된 버스(15대)로 주민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p> <p>*따라서 최적의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 또는 증차를 검토 하겠음. 단, 증차할 경우 운행에 따른 결손액에 대하여 업체 지원이 요구됨.</p>
민원 봉사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건의사항</div>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에 대한 홍보철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처리계획</div> <p>*유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지원책으로 유류 세액 인상분 보조에 대한 안내문을 2002년 11월 21일 290여 업체(개인사업자 포함)에 발송하였고,</p> <p>*2002. 12. 31 기준으로 11개 업체 금비 4,700 만원을 보조하였음.</p> <p>*2003년도에는 유가 보조금 지급 시기(분기별) 시기에 맞추어 안내문 발송 및 운송사업 등록 시 안내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임.</p>

2002년 행정 사무 감사 지적,건의 사항 처리 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 사항 처리계획
민원 봉사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지적사항</div>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설치 검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처리계획</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일자: 2002년 2월 1일 *설치장소: 제촌출장소,진부면사무소 *발급서류의 종류: 토지대장 외 14종. *2002년 발급실적: 4,718건. *주민호응도: 원거리까지 오지 않아도 현지에서 발급 가능하므로 주민 호응도는 매우 높음. *문제점: 나머지 7개 읍.면에 설치코자 하나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음. *향후 대책: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건의사항</div> 민원후견인제 추진 부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처리계획</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개별 민원의 후견인으로 처리종료시까지 책임 지원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와줌으로써 행정신뢰도 제고. *후견대상민원: 12일 이상 소요되는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 및 경제활성화 관련 민원, 노약자·연소자·장애자 신청민원. (건축사가 있는 건축민원 등 대행자가 있는 경우는 지정 생략) *민원후견인 명부: 군 본청 담당급 53명 지정. -개별민원 분야별로 본인의 희망에 의거 지정. -종합민원실 민원접수창구에 비치 접수 시, 후견지정의사 타진. *기능별 민원후견인제 운영: 건축,도시,세무,상·하수도,교통,복지,환경 등 기능별로 후견지정. -기능별로 5~10명 선정. -현 근무부서 및 전 근무부서 경력 활용. *문제점: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후견 비대상 민원일 경우는 후견인 지정 곤란. *향후대책: 민원인에게 후견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지점률을 제고하는 한편, 민원 후견인 지정 시, 민원의 즉각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실시.

2002년 행정 사무 감사 지적,건의 사항 처리 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 사항 처리계획
민원 봉사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건의사항</div> 노외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처리계획</div> <p>*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노외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시내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2002년 12월 평창읍, 대화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등 7개소에 노외 주차장 유도사인, 안내판 등을 설치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식 유도사인 8개소, - 주차장 이용 안내판 7개소, - 지주식 입구 유도사인 7개소, - 장애인 전용 주차 안내표지판 11개소, - 가로등 이용 현수식 유도사인 15개소 등
민원 봉사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건의사항</div> 버스 간이승강장 특성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처리계획</div> <p>*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설치된 간이 버스 승강장의 이미지 통합화 필요성에 따라 우리 군내에 설치된 간이 버스 승강장(벽돌형)중 노후한 승강장과 신설 승강장을 대상으로 군에서 선정한 모델(리모델링 포함)로 연차적 교체 계획임.</p> <p>*2003년은 신설 승강장 2개소(4천만원), 리모델링 승강장 10개소(4천만원)를 우선 선정, 이미지 통합화를 위하여 추진할 계획임.</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자치행정과	<p>지적사항</p> <p>4. 군수표창 남발 및 지역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시상</p> <p>○ 민선시대 민간인 또는 단체에 시상하는 군수표창의 횟수를 살펴보면, 관선보다 현격히 남발되고 있어 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바, 정확한 선발을 통하여 무분별한 표창을 자제하기 바라며, 마을자치체 등 성격상 실적평가를 통해 시상금이 지급되는 시상부분은 같은 상을 1개 마을에 연속하여 지급하고 다른 부분의 상까지 중복 시상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상 실적평가를 통한 평가라해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다른 마을과의 안배를 고려한 시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p>
	<p>처리계획</p> <p>○ 포상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적심의회를 거쳐 시상여부가 결정되기에 포상기준에 제외되지 않는 유공자에 대한 시상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사료됨. 또한 상은 회귀성의 가치보다는 유공자에 대한 공적을 기리며 널리 알리고 사기진작 차원의 긍정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다만 향후 2002년 12월 마련된 평창군 공적추천기준에 따라 엄격한 제한심사를 거쳐 포상토록 하겠음</p> <p>○ 2002년 마을자치체의 평가시 중복시상을 막기 위하여 환경부분과 통합평가를 실시하여 중복마을이 없도록 지속 개선중이며, 2003년부터는 마을자치체 최우수마을은 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임. 또한 시상받는 것을 주민들은 사기진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금년부터 시상금은 낮추고 시상마을은 늘릴 계획임. 그리고 마을자치체 평가시 '농촌마을'과 '시가지마을'로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시가지내 마을도 마을자치체를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p>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처리계획
자치행정과	<div data-bbox="277 217 445 25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지적사항</div> <p data-bbox="329 290 861 329">5. 주변여건을 무시한 공무원 인사단행</p> <p data-bbox="301 376 1267 774">○ 2002.11.6일 단행한 평창군 인사를 살펴보면, 평창군의회가 제99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실시할 것을 여러채널을 통해 집행부에 알렸고 12월 2일부터 법정 정례회가 시작됨을 인지하고도 뚜렷한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 공무원 이동으로 인한 업무 파악부족과 미숙으로 군정질문시 답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기에 급급한 형식적인 제출과 각종 통제가 상이하는 등 부족한 점이 많았고 심지어는 답변을 하지 못하여 감사가 뒤로 미루어지는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따라서 향후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는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시기를 선택하기 바람.</p>
	<div data-bbox="277 872 445 91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처리계획</div> <p data-bbox="301 956 1267 1460">○ 2002. 11. 6일자 인사발령은 주민의 기대와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밀진단 정비하고 불필요한 관행과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코자 부서별 조직진단 및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개최, 동계올림픽 정원승인 등의 사유로 조직정비가 지연됨에 따라 '02.11.6자로 인사발령이 단행되었으며 앞으로는 행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를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또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업무파악 부족으로 형식적인 답변과 자료제출 등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유도 일부 있었지만 부서별 인사이동된 직원은 평균 20~30%정도로 군정질문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해당부서장 및 담당직원의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되도록 조치하겠음.</p>

소관부서	마을공동체지원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자치행정과	<div data-bbox="312 211 473 25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건의사항</div> <p data-bbox="326 309 1103 352">5. 반상회 건의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일화 검토</p> <p data-bbox="326 395 1281 519">○ 필요에 따라 소규모로 추진되는 반상회 건의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성격상 같은 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인력과 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p>
	<div data-bbox="312 584 480 62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처리계획</div> <p data-bbox="347 676 1260 803">○ 반상회건의사업은 소규모사업 (5백만원 미만) 위주로 지원하여 가급적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고 적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별도 운영하였음.</p> <p data-bbox="347 813 1295 901">또한, 반상회운영 활성화와 인센티브 제공에도 의미를 두고 추진 하였음. 2003년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단일화하여 지원할 계획임.</p>

건의사항

6. 마을회관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

○ 우리군 마을회관 실태를 보면, 기설치된 마을회관은 상당부분 노후된 것도 있고 신규 신축은 우선순위 등 체계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즉흥성으로 설치되고 있는 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수 및 신규 설치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공개하기 바람.

처리계획

○ 기존의 마을회관은 마을의 회합이 주목적이었으나 이제는 다목적 시설(마을회관+경로당+민박+건강관리센터)은 물론 특색있는 마을회관(황토 + 목조 등)을 신축하여 관광자원화가 요구됨.

따라서, 군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침으로 마을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마을회관은 회의중심이 아닌 다목적시설로 건립
- 기존의 경로당이 시설되어 있는 지역은 건립 지양
-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해결하고 건축비만 지원(부지 기부채납 등)
- 군비를 지원받아 신축하는 경우 반드시 군 재산으로 등기

○ 이러한 건립 방침아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신청대상 지역 중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음.

구분 점수	주민활용도 (가구수)	부지확보 (마을)	경로당 건립여부	기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여부
25	100가구 이상	확보	미건립	미지원
20	80~99가구		자체시설 활용	마을자체
15	60~79가구			
10	30~59가구		경로당 노후	
5	30가구 미만			
0		미확보	지원 건립	지원

○ 또한, 마을회관의 개·보수도 평창군으로 등기된 시설을 우선 지원(개인 소유는 시설지원 지양)하여 다목적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경로당 겸용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자치행정과	<p data-bbox="291 211 445 250">건의사항</p> <p data-bbox="326 284 970 323">7. 8-9급 하급직 공무원에 대한 자체승진 검토</p> <p data-bbox="301 368 1271 570">○ "승진공무원의 대한 읍·면 전보" 인사원칙에 따라 전보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나, 8-9급 직원은 업무능력도 배양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동을 해야하는 등 업무추진 모든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인사원칙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 내부만의 기준이라면 정확한 검토를 하여주기 바람.</p>
	<p data-bbox="291 668 445 707">처리계획</p> <p data-bbox="301 805 1261 962">○ 8-9급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인사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본청에서의 승진은 읍면 전보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에서의 승진은 자체승진과 타 읍면 전보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p> <p data-bbox="301 1007 1254 1328">이는 본청과 읍면간 인사교류 및 읍면 직원의 본청 근무기회 부여 등 최일선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다양한 업무연찬 차원에서 시행하는 이유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서별 정원관리, 현원배치 규정상 승진임용시에는 전보가 불가피 하므로 앞으로도 본청에서의 승진은 읍면 전보임용을 원칙으로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다만, 특수직렬 및 읍면공무원의 승진은 자체승진 등을 확대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음.</p>

소관부서	지역:건의사항:처리계획
자치행정과	<div data-bbox="301 215 454 26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건의사항</div> <p data-bbox="329 284 1000 333">13. 인구늘리기 운동에 대한 공무원 모범적 실천</p> <p data-bbox="315 372 1281 578">○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인구유입은 당사자와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평창군 공무원 일부가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은 행정의 설득력을 잃는 사례로 이들을 설득하여 행정이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람</p>
	<div data-bbox="301 676 454 72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처리계획</div> <p data-bbox="322 754 1274 882">○ 평창군 소속 공무원은 현재 524명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성과소 및 읍면장 책임하에 특별한 사정(재산권행사등)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 직원이 주소를 이전하였음.</p> <p data-bbox="322 911 1225 1009">○ 그러나 일부 직원이 미전입하였다는 것에 대해선 사실여부를 1/4분기 중 재확인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음</p> <p data-bbox="322 1038 1274 1166">○ 이후 신규임용직원과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직원에 대해선 사전 주소이전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켜 전가족 “군민되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건의사항	<p>12.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능전환 신중한 대처</p> <p>○ 대통령 100대 과제인 읍면 기능전환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확실적인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행 초기부터 여러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성급한 시행을 자제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건의하여 주기 바람.</p>
기능 전환팀	처리계획	<p>○ 2003. 1월 강원도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상황을 검토, 분석할 계획이므로 그 결과를 향후 추진계획에 참고하고</p> <p>○ 일단 주민자치센터를 1개면에 시범실시 하는 방향을 검토하되 사전에 해당면 의원과 의견을 조율할 계획임.</p> <p>○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제정안은 문제의 부분을 찾아서 건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임.</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재무과 부과부서	<p><지적사항></p> <p>7. 도시계획내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부진</p> <p>○ 지방세법 제292조에 단서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에도 도시계획내 도로로 편입되어 사유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감면신청이 없다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것은 이중적 부담을 주는 행위임.</p> <p>따라서 도시계획이 도면으로 되어있어 직권으로 감면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면적 환산된 도시계획이 수립될 경우 보상차원이라도 전원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p>
	<p><처리계획></p> <p>○ 지역도시과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이 심의.의결되어 성과품이 납품되면 편입 필지별 조서에 의하여 직권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필지로 면밀히 대사하여 감면조치할 계획임.</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재무과 관재부서	<p><지적사항></p> <p>8.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소극적 대처</p> <p>○ 공유재산 교환에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유재산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령 101조제1항제1호가 신설(2000.10.20)되었음에도 평창군의 교환 형태를 보면 개정취지를 벗어나 개정 이전상태의 업무추진 태도와 담당자의 사적인 판단등 행정적인 입장에서 교환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교환하고자 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사고 있는 바, 향후 개정취지대로 주민과 지역경제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교환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p> <hr/> <p><처리계획></p> <p>○ 공유재산의 교환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면 「사유재산과의 교환은 당해 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행정재산 용도로 점·사용하고 있거나 점·사용코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사유재산과의 교환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p> <p>○ 다만, 2000.10.20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교환)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한것으로써,</p> <p>○ 이중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유치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환 추진코자 합니다.</p> <p>○ 그러나, 단순히 개인사유지의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교환은 불가합니다.</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재무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지적사항</div> <p>○ 객관성이 결여된 수해복구공사 계약</p> <p style="margin-left: 20px;">- 2002.8월초 집중호우와 8월말 “투사”로 인한 수해복구공사 계약과 관련, 평창군은 복구공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결심권자의 결심으로 2002년 9월30일 이전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계약을 한다고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뚜렷한 이유 없이 내부방침을 갑자기 변경하여 10월4일부터 11월14일까지 전입한 (주)한솔외 15개업체중 10개업체에대하여 전입으로 인하여 능력이 검증이 안되었음에도 작게는 1억부터 크게는 6억까지, 일부 몇 개 업체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7억에 가까운 금액을 배정하는 등 9월30일 이후 전입한 업체에 수해복구공사비 총액이 20%인 35억 3,938만원을 배정한 사실은 특혜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된 계약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감사당일 재무과장의 9월 30일 이후 전입한 업체에 대한 배정사실이 없다는 진술과 허위작성의 자료제출은 의회를 경시한 행위로서 차후 이런일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처리계획</div> <p style="margin-left: 20px;">- 2002년도 수해복구공사는 행정자치부, 강원도 등의 수해복구조기집행지침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사업은 2003년 영농기 이전과 2월 동계올림픽개최지 실사를 대비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친환경적이며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p> <p style="margin-left: 20px;">- 향후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계약업무추진을 위하여 특혜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는 과감히 공개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p> <p style="margin-left: 20px;">- 아울러 동 수해복구공사의 2003년도 상반기 마무리를 통하여 2003년도에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div data-bbox="296 317 459 36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건의사항</div> <p data-bbox="296 407 763 446">○ 선금급과 기성금 지급 검토</p> <ul data-bbox="315 474 1281 760"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군 지역경제는 사실상 관공서에 의한 자금회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특히 동절기에 업체와 군민들의 경제는 상당히 위축되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각종 공사비 집행에 있어서는 이월되는 사업이라 해도 법 또는 내부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사업추진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선금급, 기성금 지급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재무과	<div data-bbox="296 807 459 85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처리계획</div> <ul data-bbox="315 885 1281 1473"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 연초 관내 건설업체의 재정현황을 보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재정상황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48개업체에 대하여 3,713,733천원의 선금급을 지급하였으며, 각종 기성금청구에 대하여도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급되도록 노력하여 2002년 12월30일 이전에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액 2002년12월31일한 지급완료하였음. - 향후에도 관내 사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금급, 기성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재무과 관재부서	<p><건의사항></p> <p>9. 공유지 임대시 측량부담에 대한 기준마련과 홍보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유지 임대시 점유지 파악을 위한 측량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분은 민원이 부담하고 다른 부분은 행정부담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따라서 측량수수료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임대시 민원인에게 정확히 홍보하여 불평·불만 요소를 없애주기 바람
	<p><처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지의 임대시 한필지 전체를 대부할 경우 현황측량이 필요치 않으나 한 필지중 일부를 임대할 경우 대부면적의 계산을 위한 현황측량이 필요합니다. ○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은 사인간의 계약과 동일한 행정행위로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측량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행정기관의 착오나 소송등 분쟁발생시에는 군에서 직접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 임대시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홍보하여 불평·불만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재무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건의사항</div> <p>○ 불용품 매각시 대주민 매각홍보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주민 또는 사회단체는 재정여건등 여러여건상으로 인하여 중고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불용품 매각시는 취득방법과 시기, 품목을 군민다수가 알 수 있는 채널로 철저히 홍보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 또는 단체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처리계획</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불용품 매각시 매각일로부터 15일전에 공고를 통하여 일반 주민들이 인지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널리 인지하기에는 방법상 한계가 있음. -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군홈페이지(www.happy700.or.kr) 및 내고장소식지에 홍보물을 게재하여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반상회등 기타 수단을 확보하여 매각 등 각종정보에 대하여 군민들 누구나가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재무과 관재부서	<p><건의사항></p> <p>11. 화전대토지 미불하건에 대한 조속한 불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4년 화전정리 10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한 화전대토지 공유지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재산권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p><처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전대토지 미불하건에 대하여는 장기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화전대토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하며, ○ 현황파악이 완료되면 사용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감정 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거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불가하고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수의 매각토록 할 방침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문화관광과	지적사항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도 현재, 1999년부터 지금까지 담배 및 술판매등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총44건 단속중 총 27건만 징수되고 40%인 17건 52,000천원이 체납되는등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경각심 고취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문화관광과	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3월 중 체납액 독촉장 발부 ○ 2003년 6월 중 미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처분 조치 ○ 2003년 말 납입완료 (사실조사후 현황 파악하여 결손처리 대상자 정리) 	
	지적사항	평창공설테니스장 순리를 벗어난 무리한 사업추진	
문화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부의 즉흥성·선심성으로 인하여 의회와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평창읍민의 집단행동이 있었던 평창공설테니스장 조성사업과 관련, 중부 테니스클럽의 부담문제, 총가입찰, 당초보다 두배가 넘는 예산소요등 일련의 의회의 의결권을 일탈한 행위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런 순리를 벗어나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공설테니스장은 2002. 3. 13 착공하여 2002. 11. 13 준공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3억(군비)으로 2001년 당초예산 6억원을 확보하고 2002년 제1회 추경에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에는 7억원을 투자하여 코트 10면, 주차장, 관리동을 계획하였으나, 평창읍면영회와 평창군 테니스장추진위원회에서 전국재회를 유치할수 있는 국제규격의 테니스장 건립요구와 제1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하여 현시설을 건설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당초의 두배가 되는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문화관광과	지적사항	<p>마을관리휴양지 관리미흡</p> <p>○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되어 운영중인 9개소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급수시설외에는 전무한 상태로서 관광객의 무단 쓰레기 투기, 요금 징수원의 불친절, 통일되지 않은 복장, 화장실 불결함등으로 인하여 우리군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바,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기 바람.</p>
	처리계획	<p>2003년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 계획</p> <p>○ 2003년 지정(운영)대상지 조사 : 2002. 4월말까지</p> <p>○ 기반·편의시설 정비 : 2003. 5월말까지</p> <p>- 화장실 설치 18동, 급수시설 설치 1개소 분리수거함 설치 3조, 표지판 정비 10개소</p> <p>○ 2003년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2003. 6월 중</p> <p>-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공고</p> <p>-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보험가입</p> <p>- 휴양지 운영 관계자 교육 (의회 지적사항 보완대책 포함) 및 지도점검 등</p>
문화관광과	건의사항	<p>노산성 보존관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p> <p>○ 평창읍 하리 산1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역문화재인 평창 노산성에 대하여는 지표조사를 통한 복원계획 수립과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p>
	처리계획	<p>○ 2003년 노산성 지표조사를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향후 복원계획시 기초자료로 활용.</p> <p>- 노산성 지표조사 학술용역</p> <p>· 예산액 : 50,000천원</p> <p>· 기 간 : 2003. 3. ~ 2003. 12.</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환경복지과	<p>지적사항</p> <p>12.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부진</p> <p>○ 2001년, 2002년도 오·폐수 처리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대상업소보다 점검업소가 적음은 물론 위반업소 단속 건수도 단 1건에 불과하는등 청정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평창군 환경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점검과 단속이 미진한 것은 수거물을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나 그러나 경각심의 고취차원을 위해서도 한층 더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것임.</p>
	<p>처리계획</p> <p>○ 오·폐수처리시설 지도 강화를 위하여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 하여 청정계곡 및 우범지역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자체적인 점검·단속 강화를 위하여 휴대용 채수점검 장비를 구입하여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염행위를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p> <p>○ 또한 오수처리 설계 시공업체에 “시설물 사후관리” 의무를 유도 하여 하천오염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도하겠음.</p>
환경복지과	<p>지적사항</p> <p>13. 분뇨처리장 차별화된 지원</p> <p>○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는 의회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차례 차별화된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감사당일 평창군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이라고 제시한 것을 보면 다른지역과 동일한 일반사업으로서 타지역과 같이 주민의 항의가 없다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별화된 지원을 하기 바람.</p>
	<p>처리계획</p> <p>○ 분뇨처리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제4조내지 제6조에 의거 건의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p> <p>○ 「분뇨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평창읍변영회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2.12.6 평창읍변영회 총회시) - 변영회내 가칭 「분뇨처리장 주변지원사업 추진대책위원회」를 위원 10~15명 이내로 구성, 향후 대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변영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현안사업을 신청하기로 하였음.</p> <p>○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신청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형평성을 판단 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총괄부서(환경복지과)에서 연차별 필요 사업비를 일괄 확보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환경복지과	건의사항	<p>15.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확대</p> <p>○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예산액을 보면 2001년도 4개소, 1,000만원, 2002년도 7개소 1,0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음. 2002년도는 2001년에 비해 지원마을이 2개 가량 늘어났음에도 예산액에 맞추어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준비지원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노인일거리 제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매년마다 사업신청서를 받아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일거리가 부족하여 일부 경로당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경로당별 1개사업 갖기로 점차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음.</p>
환경복지과	건의사항	<p>16. 무의탁노인 회갑상 차려주기 홍보철저</p> <p>○ 무의탁노인 회갑상 차려주기 사업이 8개읍면중 일부 3개면만 편중(방림면 2, 진부면 2, 도암면 1)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미숙과 홍보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8개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무의탁노인 회갑상 차려주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만 60세가 되는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1인 50만원씩 지원하며, 마을부녀회, 읍면단위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회갑잔치를 행하는 사업임. 읍면별로 금년도 수혜 예정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자원봉사단체등과 협의후 전원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입업경영과	지적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벌채후 운재로 복구미흡</p> <p>산림벌채 후 운재로(반출로)복구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막대한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를 보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림 부분(미탄면 회동리 경림사업)에 대하여는 국유림 관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복구가 되도록 하기바람.</p>
	처리계획	<p>기존의 시설지에 대하여는 일제 점검하여 재해우려지에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향후 벌채에 대하여 필요최소면적으로 운재로를 시설하도록 계도하고 국유림 부분은 관리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방 조치하겠음.</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임업경영과	건의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산촌종합개발사업 보완시행</p> <p>평창읍 고길·지동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대화면 하안미5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p>
	처리계획	<p>대화 하안미5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 고유의 산촌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나, 일부주민만 참여로 사업취지퇴색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고길·지동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주민 자율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실시설계 시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 하겠습.</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임업경영과	건의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도로변 가로수정책 정립</p> <p>지금까지의 우리군 도로변 가로수 정책을 보면, 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의지가 변경되어 제대로된 가로수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가로수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등을 정립해보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조속히 선택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식재후 많은 수목이 고사되는 것은 토양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바, 식재전 토질 개량을 실시한 후 식재하기 바람.</p>
	처리계획	<p>2003년도 부터는 가로수관리조례를제정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식재시 충분한 검토와 설계로 활착율을 제고하고 만전을 기하겠슴.</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임업경영과	건의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사유림협업체 경영사업 확대시행</p> <p>방림협업체외 2개협업체에 지원된 사유림협업체 경영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투자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바람.</p>
	처리계획	<p>202년도 3개소(방림,장평,진부협업체) 95,000㎡에 산더덕 재배 목적의 75,018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며 가시적인 성과는 수년 후 가능함.</p> <p>2003년도에는 4개소(봉평원길, 무이, 진조, 이목정협업체)에 24,000㎡에 산더덕재배 목적의 144,000천원 예산수립하여 계획중이며 향후 협업체 요구의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실시성과 거양 코자함.</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임업경영과	건의사항	<p>○ 보호수 관리철저</p> <p>미탄면 창리 169-3번지의 26개소, 10종 44본의 보호수에 대하여 인근 주변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보고 주변 상황이 보호수 관리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근 가옥과 토지를 균유화 해서라도 보호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처리계획	<p>매년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탄면 창리 169-3번지에 생립하고 있는 보호수 주변에 대하여 2002년도 군에서 매입코자 토지주에 의견을 들은바 매각의사 없어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지속적인 매각 권유로 관리 방안을 모색 하겠습.</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임업경영과	건의사항	<p>○ 산불방지자생단체 중복지원 자제 산불방지활동단체지원이 중복지급없도록하고 읍·면유급 감시원채용에 있어서도 이들의활동과 중복되는 일이없도록 할것</p>
	처리계획	<p>산불방지 활동단체의 활동계획을 수립제출 토록하고 유급 감시원에 대하여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감시효과를 높이고 중복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건 설 과	지적사항	<p>한탄~마하간 군도 확포장 약속이행</p> <p>○ 레프팅 수요증가로 인하여 한탄~마하간 군도를 이행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군도는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여 현지주민이 농업경영과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따라 평창군은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도로를 확포장 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을 설득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후순위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올해 부터 편입부지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조속히 확포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한탄~마하간 군도5호선 전체7km중 현재 2.3km는 확·포장 완료하였고, 영월댐 건설백지화에 따라 2002년 용역비 80백만원을 투자 1.8km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p> <p>○ 2003년 2억(도비1억, 군비1억)을 투자 도로 L=0.7km를 우선 확·포장할 계획이며 본 노선의 확포장 중장기계획이 2005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군도중장기정비 양여금사업 계획 수립시 우선 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건 설 과	건의사항	골재수급 대책마련
	<p>○ 2003년도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많은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모래등 레미콘에 사용되는 골재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내년도 골재수급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육상골재채취등의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관급 공급업체가 한곳에 편중되어 레미콘 공급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면 재무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달업체에 건의하여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수해복구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p>	
건 설 과	처리계획	<p>○ 2003년도에 각종사업에 소요되는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위하여 골재채취허가 구역외 별도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퇴적원토사준설등 골재수요 충족에 지장이없도록 노력하겠으며.</p> <p>○ 레미콘의 공급 차질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서 운송차량을 증대(3대)하는등 재료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통보받았으며, 사업추진시 면밀히 재확인하여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시 관련기관에 협의하여 업체공급물량 조정등 행정조치로 수해복구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음.</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건 설 과	건의사항	<p>기화 받기반정비지구 관정지원 확대</p> <p>○ 2002년 12월 31일 완료계획에 있는 기화 받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관정 이용실태를 보면 첨단버섯재배사 5동이 위치하고 있어 기존관정으로는 용수가 부족한 바, 관정의 수량을 다시한 번 점검해 보고 부족할 경우 관정 추가개발 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2002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동강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정3공을 설치한 바 있으나 그중 1공은 펌프용량부족으로 용수공급이 원활치 못하며, 기화리장(최종은)은 현재의 관정으로는 용수가 부족하므로 2공의 관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p> <p>○ 관정2공 설치 및 펌프교체를 위해서는 약 100,000천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현재로선 예산이 없으므로 당장의 사업은 불가하므로 2003년 추경 및 200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조치하고자 함</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지 역 도시과	지적사항	<p>17. 미탄·장평 오수처리장 운영미흡</p> <p>○ 미탄면 창리에 위치한 미탄 오수처리장을 보면 오폐수가 유입관로로 유입되지 않고 지하수로 누수가 예견되는 바, 누수현상 발생시 지하수 오염원이 우려되므로 유입관로를 점검하기 바람, 장평 오수처리장의 경우 처리용량은 1일 250톤이나 배출량은 1일 600톤 가량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바,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또한 속사지역은 관광객 급증과 집단취락지역으로 오수처리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창리(미탄) 오수처리장 유입수 누수 및 장평오수처리장 유입수 과다유입 처리능력 저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동절기로 관로 점검이 어려운 바 해빙과 동시 전수 점검하여 해결하겠음</p> <p>○ 속사지구 오수처리장은 환경부승인 마을하수도시설 중기계획상 5단계 계획지구(2012년)에 수립되어 있으나, 조기시설 필요성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2004년도 사업으로 계획 년도를 앞당겨 반영,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음</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농 업 경 영 과	지적사항	<p>18.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미흡</p> <p>○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영농계획서를 접수, 현지확인하여 영농계획이 현지와 부합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취득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나, 현지에 입목이 있는등 영농계획 실현이 불가능함에도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하여 취득후 농지법에 의한 처분명령을 하여 토지주와 법정분쟁이 발생하는 등 농지취득자격발급 업무에 상당부분 소홀함이 있고 농지전용 신고시 읍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숙지 미흡으로 민원이 접수되어도 처리가 미흡하여 접수하지 않고 상당부분 민원처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한 바 철저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연 1회 농지전용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실시, 연 2회 농지전용담당공무원 농지전용관련 교육실시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농업 경영과	지적사항	<p>18.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미흡</p> <p>○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영농계획서를 접수, 현지확인하여 영농계획이 현지와 부합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취득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나, 현지에 입목이 있는등 영농계획 실현이 불가능함에도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하여 취득후 농지법에 의한 처분명령을 하여 토지주와 법정분쟁이 발생하는 등 농지취득자격발급 업무에 상당부분 소홀함이 있고 농지전용 신고시 읍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숙지 미흡으로 민원이 접수되어도 처리가 미흡하여 접수하지 않고 상당부분 민원처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한 바 철저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연 1회 농지전용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실시, 년 2회 농지전용담당공무원 농지전용관련 교육실시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p>
	지적사항	<p>○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실태를 보면, 당초취지와 맞지않게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시설물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바, 운영과 관리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마을주민 요구에 따라 사업이 지원되었으나 주민의 활용 의욕이 낮고 건강관리실 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p> <p>- 향후, 건강관리실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시설물관리 운영위원을 선정 및 운영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농 업 경 영 과	건의사항	<p>25. 농업용 차량지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후 지원 ○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에 지원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치 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기 바라며 축협등 생산자 단체에 지원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100% 균비지원을 자제하고 일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p>
	처리계획	<p>○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에 지원되는 차량은 농특산물 직거래, 버섯저온 수송용 차량등에 한해 면밀한 성과분석 및 발전 전망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농·축협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차량은 일정한 자부담을 원칙으로 지원할 계획임.</p>
	건의사항	<p>○ 농업대안으로 평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민박 및 펜션사업에 대하여 자칫 부동산 투기꾼과 외지인, 인반 특정인으로 하여금 영리목적의 상업화 될 수 있는 바, 실질적인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사업자 선정과 철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향후처리계획 불임참조</p>

농촌민박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목적

기존주택을 증. 개축하여 민박 치뤄 농가 소득

2. 사업규모

사업명	사업비 (천원)	규모 (호)	비고
2004 농림사업 "농촌민박"	미정	미정	기존주택을 민박의 용도로 증.개축하여 활용 -이용객의 숙박에 부수되는 취사시설과 위생관련 화장실, 욕실(샤워실) 설치
관광농촌숙박시설 확충지원	150,000	4호	
농협협력 "민박사업"	5,000,000	100호	

3. 관련법령 및 용자 지원조건

농림사업 "농촌민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정비법 제 66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 63조 ○ 사업비 : 20,000천원/호(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연리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농림사업지침 4권 1569쪽)
관광농촌숙박시설확 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지침 없음(사업비 균비 60,000천원, 도비 15,000천원, 자부 담 50%)
농협협력 "민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조건 : 8.25%(지방자치 3.0%, 군농협 1.0%, 자부담 4.25%)

4. 지원대상자 : 농업인, 영농법인

가. 지원제외자(2003 농림사업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

- 농업진흥지역
- 해당사업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임대, 위탁 등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수산업. 임업(표고버섯) 종사자
- 배우자 및 법인 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 불거래

5. 사업추진 체계 및 실시요령

- 농림사업공고 → 읍면신청 → 농정심의회 → 농림부 → 확정 → 사업추진
- 신청서류 : 민박신청서 1부, 신용검토의견서 1부(대출용)

6. 선정순위 : 농정심의회 협의 결정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농업 경영과	건의사항	<p>25. 백합종구 지속적 지원</p> <p>○ 수출주력 작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백합 화훼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지원이 축소될 경우 전략작목 성장에 많은 영향이 있음. 따라서 종구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p>
	처리계획	<p>○ 우리군의 주력 수출작목인 화훼분야의 백합 종구지원은 우리군의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임.</p> <p>특히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킴은 물론 매년 2억원의 군비를 투자 100만구 이상의 종구를 지원할 계획에 있음..</p>
보건 의료원	건의사항	<p>○ 서민층을 위한 무료검진 홍보철저</p> <p>노인무료 건강진료등 서민층을 위한 보건시책이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수혜인원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철저한 홍보로 사업효과를 높여주기 바람.</p>
	처리계획	<p>○ 각종 보건사업별 대상자에 대한 무료검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홍보전략으로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유선방송이용 : 월 2회 이상 - 지방신문 배달시 간지홍보 : 분기 1회 이상 - 이동보건의료원 운영 적극 활용홍보 : 월 2회 이상 - 지역담당제 가정방문 개별 홍보. - 내고장 소식지 홍보 : 월 1회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축 산 경 영 과	지적사항	
		<p>20. 평창도축장 시설개량사업 사업검토 미흡</p> <p>○ 평창도축장 현대화시설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 예상치 못한 막대한 사업자 부담과 예산지원이 예상되는 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또한 축산물 가공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도축으로인한 오·폐수 하천유입에 대하여는 현재 평창도축장 폐수처리시설이 충분함으로 완전정화 후 방류시키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음..</p>
	지적사항	<p>○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어도시설 대부분이 현지 실정에 맞지 않게 설계·시공되어 어류의 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당초 목적인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부서간 치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가 바람</p>
	처리계획	<p>○ 기존보(관내 2개소) 타당성 조사후 시설 대상보를 선정하고 어도 규모, 형태는 설계용역시 신중히 결정</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축 산 경 영 과	건의사항	
		<p>25. 치어방류 사업 수종선택 신중한 검토 ○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치어방류사업에 대하여는 방류장소를 한 곳에 편중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선택하기 바람 어종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군 자연조건에 맞는 어종을 선택하여 방류사업을 실시하기 바람.</p>
	처리계획	<p>○ 맑은 물에 서식하는 토종어종(산천어, 메기 등)을 선택하여 평창의 청정성 이미지를 제고하고,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유도</p>
	건의사항	<p>30.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강력한 추진 ○ 최근 불법어업 형태가 외지인에 의해 야간으로 첨단 장비를 동원 하는 등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바, 지능화된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방법을 개선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주기바람</p>
처리계획	<p>○ 민간인으로 선정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주야간 지속적 단속추진,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기술개발과	지적사항	<p><input type="checkbox"/> 물고추냉이 사업자선정 미흡</p> <p>○ 농업부문의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미탄면 창리 255번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고추냉이 실증시험재배 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외지에 주소를 두고 영리목적의 출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외지인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바람</p>
	처리계획	<p>○ 2000년 대체작목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물고추냉이 실증시험재배 사업의 특성상 적지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0. 1. 24 각읍면에 사업자 신청을 받은 결과 미탄면 창리 합준식(원복수산) 1농가만이 신청되어 농업기술센터 심의회 심의결과로 선정됨에 따라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사업(상사업비)인 본 사업을 우리군에 유치 물고추냉이 실증시험재배 성공여부에 따라 확대 재배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p> <p>○ 앞으로 물고추냉이 지원사업 확대재배 추진시 신규재배 가능 적지를 발굴 우리군에 실거주하는 신기술 수용의지 및 사업추진능력이 강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고급향신채 「청정 물고추냉이」의 지역특산품화 수출 대체작목으로 육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p>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기술개발과	건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버섯재배 시범포 교육장활용</p> <p>○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버섯재배 시험포에 대하여는 버섯재배 농가가 기술습득과 농가간 기술 교환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주기바람</p>
	처리계획	<p>○ 2003년도 실증시험 버섯재배사 운영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7,000천원(중균, 재료비) - 사업량 : 신품종 버섯류 실증시험재배 - 실증시험 재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타리버섯 품종별 재배 특성비교 · 폐쇄대체 배지개발시험 : 농산부산물 왕겨배지 이용 · 새로운 버섯 실증시험재배 : 차신고 버섯 소득성과 비교분석 우리군 새로운 버섯 작목으로 정착 도입 - 실증시험 버섯재배사 농업인 견학 및 교육장 적극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버섯재배 농가 및 버섯 작목반 등의 견학·토의 장소로 적극 개방 활용 및 신규 재배 희망농가 교육장으로 적극활용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계획

소관부서	지 적 · 건 의 사 항 처 리 계 획	
기술개발과	건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수박·인삼 재배사업 지원확대</p> <p>○ 평창읍 중부리 주민의 고소득 작물인 수박과 평창읍 일원에 점차 확대재배되고 있는 인삼을 남부권지역의 주력작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농자재등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랍.</p>
	처리계획	<p>○ 평창수박의 명품화를 위해 2003년도 군비 50,000천원을 지원 10ha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 터널재배자재, 문양표시 자재, 모양 조성 기구, 피복재배 재료 등을 지원계획이며</p> <p>○ 인삼은 전량수매를 통한 판로가 안정되어 있어 확대지원이 필요한 작목으로 2002년 현재 17농가 19.6ha가 재배되고 있으며 금후 인삼협동조합 및 재배농가, 작목반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규 또는 규모확대 조성 농가를 중심으로 시설, 토양개량제 등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음.</p>
기술개발과	건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경운기 사고예방 대책마련</p> <p>○ 교통사고 사각 기기인 경운기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야광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 주기 바랍.</p>
	처리계획	<p>○ 2002년 추진실적</p> <p>-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시 주행형 농기계(경운기) 교통사고 예방 위해 야광 반사채 700대 부착 완료</p> <p>○ 2003년 110개리 대상 농기계순회수리교육시 교통사고 예방 야광 반사채 1,000대 공급 계획</p> <p>※ 10,000원×1000대 =10,000천원 확보</p>